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206
----------	-------

발의연월일 : 2026. 1. 21.

발 의 자 : 안상훈 · 최보운 · 박덕흠
고동진 · 배현진 · 김미애
한기호 · 백종현 · 김소희
주호영 · 김은혜 · 정연욱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검역조사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면서 서도, 서류 심사만으로 검역조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항공기나 선박 내의 현장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이에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무작위 표본조사의 방식으로도 검역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검역감염병에 대한 감시를 보다 철저히 수행하려는 것임.

또한, 항공기나 선박에 대하여 검역조사를 실시한 결과 검역감염병에 감염된 사람이나 검역감염병 병원체 또는 검역감염병 매개체가 발견된 경우 해당 항공기나 선박에 탑승하였거나 탑승할 예정인 사람들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여 승무원이나 탑승객이 검역감염병에 감염될 위험을 인지하고 스스로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현행법은 검역조치의 수행 여부를 질병관리청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검역감염병에 감염된 사람,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검역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된 운송수단이나 화물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검역조치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제12조의4 및 제15조).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2항 단서 중 “검역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큰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검역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큰 경우, 무작위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 단서에 따라 탑승하여 검역조사를 실시한 결과 검역감염병에 감염된 사람이나 검역감염병 병원체 또는 검역감염병 매개체가 발견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에 탑승하였거나 탑승할 사람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의4제3항 단서 중 “검역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큰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검역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큰 경우, 무작위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3항 단서에 따라 승선하여 검역조사를 실시한 결과 검역감염병에 감염된 사람이나 검역감염병 병원체 또는 검역감염병 매개체가 발견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하였거나 승선할 사람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검역감염병에 감염된 사람이나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된 운송수단이나 화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역조사 결과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제5항 및 제12조의4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검역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출발하지 아니한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검역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검역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출발하지 아니한 사람, 운송수단 및 화물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3(항공기 검역조사) ① (생 략)	제12조의3(항공기 검역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검역소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검역 감염병이 국내에 전파될 우려 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서 류 심사로 검역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u>검역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큰 경우 등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경우</u> 에는 탑승 하여 검역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 ----- ----- ----- ----- ----. ---- <u>검역감염병의 전파 위 험이 큰 경우, 무작위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등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u> ---- -----.
③ · ④ (생 략) <u><신 설></u>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 단서에 따라 탑승하 여 검역조사를 실시한 결과 검 역감염병에 감염된 사람이나 <u>검역감염병 병원체 또는 검역 감염병 매개체가 발견된 경우 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에 탑승하였 거나 탑승할 사람에게 그 사실 을 통지하여야 한다.</u>
제12조의4(선박 검역조사) ① · ②	제12조의4(선박 검역조사) ① · ②

(생 략)

③ 검역소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검역감염병이 국내에 전파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서류 심사로 검역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검역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큰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승선하여 검역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신 설>

제15조(검역조치) ①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유입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검역감염

(현행과 같음)

③ -----

----. ----검역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큰 경우, 무작위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3항 단서에 따라 승선하여 검역조사를 실시한 결과 검역감염병에 감염된 사람이나 검역감염병 병원체 또는 검역감염병 매개체가 발견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하였거나 승선할 사람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검역조치) ① -----

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이나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u><단서 신설></u> 1. ~ 8. (생략) ② ~ ⑤ (생략)	----- ----- ----- ----- ----- ----- ----- <u>다만, 검역감염병에 감염된 사람이나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된 운송수단이나 화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u> 1. ~ 8.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	--